

사회복지법인 유은(唯恩)복지재단 2017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안

사회복지법인 유은(唯恩)복지재단

2017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록

I 부 회 의

- * 일 시 : 2017. 6. 9.(금요일), 14:05 ~ 14:45
* 사 회 : 이종만 대표이사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권남규 사무국장이 임원 총 9명 중 이사 5명, 감사 1명 출석, 이사 2명 위임을 보고하자,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에 의거 의결정족수가 됨에 따라 의장인 이종만 대표이사가 인사 말씀을 한 후,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 2017년도 3차 임시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2. 경과보고 : 권남규 사무국장이 2017-3차 임기이사회 이후 본 재단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별첨자료 1」의 서면 및 구두로 결과를 보고한다.

3. 안건상정 : 이종만 의장이 본 재단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의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자, 박종공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상정할 것을 의결하다.

제 1호 : 외부추천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 의결의 건

제 2호 : 기타 안건 심의 : 의결의 건

4. 심의 · 의결사항

1) 안건 제 1호 : 외부추천이사 선임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한 미리 나눠 준 [별첨자료 2]의 본 재단 외부추천이사 2017년 6월 23일 자로 그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이때 고유나씨와 김윤애씨를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후 안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추천받은 [별첨자료 3]의 김윤애 외 3명의 외부추천이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심의한 결과 고유나씨와 김윤애씨를 2017년 6월 24일부터 2020년 6월 23일까지의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기로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박종공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2) 안건 제 2호 : 기타 안건 심의 · 의결의 건

이종만 의장이 상정한 기타 안건 심의 ·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심의를 마칠 것을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박종공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5. 회의록채택 : 이상으로 심의 · 의결된 안건들의 정확무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낭독케 하니 수정 보완할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채택하자는 데, 박종공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6. 폐회선언 :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심의 · 의결되었으므로 폐회할 것을 박종공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종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 기록자 : 사무국장 권남규 (인)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17. 6. 9.

사회복지법인 유은(唯恩)복지재단

대표이사

이 종 만



이 사 박 종 공



이 사 임 성 진



이 사 김 윤 애



이 사 고 유 나



감 사 권 현 서



위 임 자

강 성 진



위 임 자 장 석 준

